

“ 가치있는 스포츠, 같이하는 인권존중 ”



## 대한우슈협회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스포츠지원포털(경기인등록시스템) 내 선수(생활체육목적 등) 등록  
협조요청

1. 대한우슈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(정의), 제5조(활동자격), 제6조(경기인의 지위), 제7조(경기인등록시스템) 및 제17조(등록 및 등록지) 관련입니다.
2. 대한우슈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경기인(선수·지도자·심판·선수관리담당자)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경기인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.
3. 대한체육회와 대한우슈협회가 주최·주관하는 대회 참여를 위해 경기인 등록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협조요청사항: 경기인 등록 독려 및 홍보[생활체육목적(동호인 팀·선수 등록) 특히 저조]

※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격 기준: 본회 선수로 등록된 회원 (2022년부터 전면시행)

붙임: 가. 등록매뉴얼(동호인) 1부

나. 동호인 등록 FAQ 1부. 끝.

(사)대한우슈협회장



수신 시도협회장, 대한태극권연맹회장, 대한산타연맹회장

★사원 정환 사원 교수 대리 박선민 사무처장 박영진

전무이사 전결 04/20  
이해수

협조자

시행 대한우슈협회-904 ( 2022.04.20. ) 접수 ( )

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핸드볼경기장 118호 / http://wushu.sports.or.kr

전화 02)412-6381~2 /전송 02)415-0307 / kwa6381@hanmail.net / 공개